

『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 중 오자를 개정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(안 제7조제2항)
 - 제7조의 규정을 준용 → 제6조의 규정을 준용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해당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조문 중 단순 오자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